



이슈와 논점



이슈와 논점 | 제1564호 | 2019년 3월 7일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이내영 | www.nars.go.kr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의 쟁점 및 향후 과제

송민경*

1. 들어가며

증권거래세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뜨겁다. 증권거래세의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오래전부터 금융투자업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고, 국회에도 관련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¹⁾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는 그동안 찬반 의견 존재, 부처 간 견해 차 등으로 논의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최근 여당에서 증권거래세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기획재정부 장관도 증권거래세 개편가능성을 언급하는 등²⁾ 관련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증권거래세 개편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증권거래세 현황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자본시장육성책의 일환으로 1972년 폐지된 바 있고, 1979년부터 「증권거래세법」에 근거하여 다시 부과되고 있다.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이다.³⁾ 기본세율은 0.5%이나, 유가증권시장의 경우에는 0.15%,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에는 0.3%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⁴⁾ 또한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증권거래세 외에도 부가세(surtax)인 농어촌특별세(0.15%)가 별도로 부과된다.⁵⁾

2017년 기준 증권거래세의 징수 실적은 4조 5,083 억원이며, 증권거래세 관련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총 6조 2,828억 원 규모다.

[표 1]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세수 실적

(단위: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권거래세	30,771	31,210	46,699	44,681	45,083
농어촌특별세	15,292	14,589	18,613	16,371	17,74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1) 현재(2019.2.)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은 총 4건임(의안 번호 2012810, 2016748, 2016885, 2017796)

2)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장 기자간담회 발언문」, 2019년 2월 10일; 박준식, 「기재부, 증권거래세 인하 + 양도세 보완 분석」, 『머니투데이』, 2019년 2월 21일자.

3) 단,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 외의 주권등의 양도 시 주권등이 시기(時價)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되는 때에는 해당 시가 또는 그 정상가격,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 가격 평가액 등이 과세표준이 된다.(※ 「증권거래세법」 제7조)

4) 「증권거래세법」 제8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5)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

3. 해외사례

(1) 증권거래세 운영 국가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주로 아시아 국가들에서 증권거래세를 부과 운영 중이다. 중국은 0.3%의 세율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해 오다가 2008년 이후 0.1%로 세율을 인하하였으며, 홍콩은 0.1%+5홍콩달러, 싱가포르는 0.2%, 대만은 0.15%의 세율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⁶⁾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주식을 포함한 금융 거래에 대하여 금융거래세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프랑스는 2012년 8월부터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초 도입 당시 금융거래세율은 0.2%였으나, 2017년부터 0.3%로 세율을 높였다. 이탈리아는 2013년 3월부터 주식거래에 대하여, 2013년 9월부터는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하여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식거래에 대한 금융거래세율은 0.22%이며, 장내거래에 대해서는 경감세율인 0.12%가 적용된다.⁷⁾

그 밖에 영국은 증권거래의 기록, 즉 등록 시에 매수자에게 인지세를 부과하는데, 인지세율은 매입가액의 0.5%이다.

(2) 증권거래세 폐지 국가⁸⁾

미국의 경우 1914년부터 1966년까지 연방 차원에서 주식발행 및 이전에 대하여 주식이전세(stock transfer tax)를 부과하였으나 거래세가 증

권거래를 복잡하게 한다는 이유로 1965년 폐지하였다.

일본의 경우 1953년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체하여 증권거래세를 도입하였다가, 1989년 4월 0.55%이던 증권거래세율을 0.3%로 낮추면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재도입하였다. 그 후로 10년간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병존하여 운영해오다가, 1996년 이후 행해진 금융개혁(Big Bang) 작업의 일환으로 1999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0.3%이던 증권거래세율은 폐지 직전인 1998년에 0.1%로 인하되었다.

스웨덴의 경우 1984년 증권거래세를 도입하였으나 1991년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로 전환하였다. 독일은 1991년까지 증권거래세를 운영하다 폐지하였다. 폐지 전까지 증권거래세는 0.25%의 세율로 운영되었다.

[표 2] 주요국의 증권거래세 운영 현황

구분	국 가	증권거래세율	비고
운영	한국	0.3%	기본세율(0.5%)
	중국	0.1%	
	홍콩	0.1%	
	싱가포르	0.2%	
	대만	0.15%	
	프랑스	0.3%	금융거래세
	이탈리아	0.22%	
	영국	0.5%	인지세
폐지	미국	0.04%	1965년 폐지
	일본	0.1%	1999년 폐지
	스웨덴	0.5%	1991년 폐지
	독일	0.25%	1991년 폐지

주: 한국은 증권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가증권시장(농어촌 특별세 0.15% 포함), 코스닥, 코넥스 시장 등에서 탄력세율 0.3%가 적용되므로, 증권거래세율을 0.3%로 표기함
 자료: 김갑래 외(2017), 오윤 외(2015), 이상엽(2016)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6) 김갑래·황세운,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 선진화: 입법정책적 고려 사항」, 『이슈보고서』 17-10, 자본시장연구원, 2017, p.19.

7) 이상엽, 「이탈리아 금융거래세가 주식 및 지수선물에 미친 효과 분석」, 『재정포럼』 제236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2, pp.8~11.

8) 오 윤문성훈, 「금융자산거래 과세제도 개선방안」, 『조세법연구』 제21-1호, 세경사, 2015, pp.86~91.

4. 주요 쟁점

(1) 조세부과의 적정성

증권거래세는 이득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되는 거래세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손실이 확정되어 담세력이 없는 투자자에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특히 증권거래로 손실을 보는 투자자 중에는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래세는 거래와 관련한 행위에 담세력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세금인만큼 담세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⁹⁾도 존재한다. 증권거래세 외에도 취득세·등록세·인지세 등 거래세의 형태로 부과되는 다양한 조세가 존재하며, 증권거래세는 과도한 투기적 거래의 억제라는 분명한 과세 목적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과세 목적의 정당성 차원에서 부과가 적절하다는 것이다.

(2) 자본시장 활성화 vs 투기적 거래 증가

증권거래세 개편의 효과에 관한 논쟁이 존재한다. 거래비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증권거래세를 인하 또는 폐지하는 경우 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투자자의 거래비용 완화가 시장의 유동

성 제고를 가져와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와, HFT(High Frequency Trading; 고빈도 매매) 기술을 이용한 투기적 매매의 증가로 장기투자가 줄어들어 문제가 발생하여 자본시장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3) 세수 감소

증권거래세의 인하 또는 폐지 시에는 증권거래세수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국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권거래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목적에서도 증권거래세는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세는 징수 방법이 간단하여 정부의 조세 수입 확보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내국세 중 증권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은 상황으로¹⁰⁾ 세수 감소에 대한 고려는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4) 이중과세 논란

우리나라는 주식 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외에도 「소득세법」에서 열거하는 특정 주식(비상장주식,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¹¹⁾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부과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양도소득세의 과세 범위가 점차 확대¹²⁾되고 있

9) 문성훈, 「현행 주식투자 과세제도의 주요 논의 및 평가」,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추경호의원실 토론회 발제문, 2019. p.38.

10) 2017년 기준,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총 내국세 230.8조 중 증권거래세수 실적은 4.5조로 내국세의 약 2% 비중을 차지함(※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1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12) 대주주범위 확대 추이: (‘18.4~’20.3)15억원~(‘20.4~’21.3)10억원→(‘21.4~’)3억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는 상황에서 해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증권거래세의 폐지 시에는 이중과세 논란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해당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부과되는 조세로 응징과세적 성격이 있고, 양도소득세는 거래에 따른 이득을 담세능력으로 보아 그에 과세하는 조세로 응능과세적 성격을 지니므로 양 세목의 성질상 차이가 존재하고, 양 조세는 과세목적 및 과세대상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5. 향후 과제

우선, 증권거래세의 개편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증권거래세 개편에는 과세 형평, 자본시장 및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증권거래세의 인하 또는 폐지가 자본시장 활성화 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거래량은 증권거래세율 외에도 대내외적 경제 상황, 투자 심리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증권거래세의 인하 또는 폐지가 가져올 증시 부양 효과와 세수 감소 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한 상세 시나리오 분석을 바탕으로 발생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둘째,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간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

된다.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는 단순히 증권거래세 자체의 인하·폐지의 문제만으로 고려되기 보다는 금융소득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증권거래 차익에 대하여 전면적인 양도소득세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증권거래세의 개편과 더불어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의 확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분리과세, 종합과세 등 어떠한 과세 방식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 및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 허용 여부 등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여러 논점들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증권거래세의 개편 시에는 점진적인 조정을 검토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HFT 기술 등을 활용한 초단타 거래의 급격한 증가라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점진적으로 과세체계를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병행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과세체계를 전환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본의 사례에서 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